

##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 기말평가 유의사항

## &lt;중요 공지사항: 코로나19 예방 관련하여&gt;

※ 확진자의 응시 거부 및 실시방안은 각 학교 방침에 따름(시험 실시 시 시험지 및 답안지는 다른 수강생과 마찬가지로 시험 직후 회수함)

☞ 확진자의 응시 거부 및 실시방안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학교에 확인하기 바랍니다.

## 1. 시험장소에 올 때

## 가. 반드시 마스크 착용

○ 마스크는 개인적으로 구비하여 반드시 착용할 것

☞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장(에비시험장 포함) 입장이 절대 불가능함  
(학교에서 별도로 마스크를 비치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함)

☞ 마스크는 시험 중에도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함

## 나. 신분증(또는 학생증) 소지

○ 신분증(또는 학생증)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시험장에 출입할 때마다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(학생증)도 확인하게 되므로, 항상 신분증(또는 학생증)을 지참해야 함

## 2. 시험시작 60분 전부터 시험장 입장 가능

○ 시험시작 60분 전부터 시험장(에비시험장 포함)으로 입장 가능(각 시험장 별로 출입하는 문은 1개만 운영할 예정임)

☞ 시험장 입장 시 체온측정 여부는 학교 방침에 따름

☞ 학교 방침에 따라 체온측정한 결과 37.5도 이상이거나 스스로 고열(37.5도 이상)로 신고한 경우, 에비시험장 입장

※ 에비시험장의 운영 여부는 각 학교 방침에 따름

☞ 에비시험장의 운영 여부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학교에 확인하기 바랍니다.

○ 시험장 입장 시 문 앞에서 ① 마스크 착용, ② 신분증(학생증)을 확인받은 후 입장할 수 있음

- 이는 회장실에 다니올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, 시험장에서 나갈 때에는 반드시 뒀 2가지를 지참해야 함(다시 시험장에 입장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)

#### <참고사항>

##### 1. 시험에 응시한 경우

- 원칙적으로 A학점(A+, A0, A-)을 35%, B학점(B+, B0, B-)을 65% 부여할 예정임
-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낮은 학점을 부여할 수도 있음

##### 2. 합리적인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

- 소명자료 제출을 전제로 '시험에 응시한 수강생 대비 최하위에 해당하는 학점' 또는 '재시험 기회'를 부여함
- 신청 기간: 시험 실시 후 2022. 6. 14.(화) 24:00까지 담당 교수에게 소명자료와 함께 이메일을 발송해서 신청하면, 사법연수원 교수실에서 재시험 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함 (반드시 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고, 다만 소명자료는 신청일로부터 1-2일 내에 보완할 수 있음)
- 이 때 '시험에 응시한 수강생 대비 최하위에 해당하는 학점' 또는 '재시험 기회' 중 한 가지만 명확하게 특정하여 신청해야 함
- ※ 재시험 일시: 2022. 6. 25.(토) 14:00-18:00  
(최준 확정된 일시, 장소 등은 개별적으로 통지 예정)
- 재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 교수가 교칙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음

##### 3. 별다른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

- F학점이 부여됨

## 1. 시험시작 전

### 1. 시험시작 20분 전 : 입실 완료, 소지물건 제출 등

- 신분증(또는 학생증)을 반드시 미리 준비할 것
-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화장실을 다니오고, 입실을 완료할 것
  - ☞ 시험시간 시작 1시간 이후부터 화장실 출입을 허용함(1시간 이후 화장실 출입을 할 때에도 남녀 각 1명씩 차례대로 다녀와야 하고, 동시에 화장실에 갈 수 없음)
- 신분증(학생증), 필기도구, 최소형 포스트잇(별전 및 기록 크기피상: 5cm × 1.5cm 정도), 자, 스테이플러(날붙이기 포함), 독서대 1개(1단, 가로 50cm × 세로 25cm 크기를 넘지 않는 것에 한함), 귀마개, 휴지, 골무, 시계(시계기능만 있는 전자시계 포함)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가방 속에 넣어 가방을 교실 앞에 제출할 것
- 핸드폰은 절대 몸에 휴대할 수 없음(전원을 반드시 끈 후 가방에 넣어 교실 앞에 제출할 것)
  - ☞ 시험 중 핸드폰 휴대가 발견되거나, 벨소리뿐만 아니라 진동음이라도 울리는 경우 상당한 감점 예정
- 신분증(학생증)은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
- 개인용 별전은 지참 불가(별도의 시험용 별전만 사용 가능)

### 2. 시험시작 15분 전 : 출입문 시정 / 답안지에 성명 등을 기재

- 답안지를 배부받은 즉시 학교, 학반, 성명(생년월일 병기)을 기재할 것
  - ☞ 답안지에는 표지 '하단'의 '인적사항'란에만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고, 그 외에는 답안지에 절대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말 것(상당한 감점이 될 수 있음)
- 시험시작 전에 메모지에 줄을 긋거나 쓰는 것은 금지
  - ☞ 시험시간 시작 15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실을 금지하고(출입문 닫음), 시험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험에 다시 입실을 허용함
- 시험용 별전에 줄을 긋거나 쓰는 것은 물론 시험시작 전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 역시 금지

### 3. 시험시작 5분 전 : 문제지에 성명 등을 기재

- 문제지를 배부받은 즉시 학교, 학반, 성명(생년월일 병기)을 기재할 것
  - ☞ 문제지는 최수할 예정이므로 절대 가져갈 수 없고, 본인의 문제지가 없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예정이므로, 반드시 문제지에도 학교, 학반, 성명(생년월일 병기)을 기재해야 함

### 4. 시험시작 2분 전 : 파본·낙장 확인

- 안내에 따라 문제지에 파본이나 낙장이 있는지 확인할 것

- 문제지 배부 후 또는 시험 도중 문제지를 파손하거나 떨어낼 수 없음. 발견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(다만, (답안지와 달리) 문제지에는 형광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)

## II. 시험시간

- 필기도구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하고(한가지 색깔의 필기구만 사용해야 하고, 색깔이 다른 필기구를 혼용할 경우 감점 처리됨), 인필은 사용하지 말 것
- 수정액,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: 답안지에 수정액 등으로 정정하는 것을 금지함(수정액 등으로 정정시 정도에 따라 0점 처리 또는 상당한 감점 예정). 정정이 필요할 경우 그냥 삭제 후 기재하면 됨
- 시험 종료 시간 전에 시험을 마친 학생이 있을 경우 문제지, 답안지를 모두 제출 받고 퇴실 가능(다만, 시험 종료 5분 전까지만 퇴실이 허용되고, 시험 종료 5분 전부터는 퇴실 불허)
- 답안지는 평가 종료 전에 편철을 완료하여야 하고, 평가 종료시까지 편철하지 않은 경우 감점 처리함
- ※ 마스크는 시험 중에도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함

## III. 시험종료

- 시험종료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퇴실할 것
  - ※ 시험종료 후에 즉시 나가지 않거나 계속하여 답안 작성 시 부정행위 또는 감점 대상임(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수거하여 개수가 확인된 후 조교의 안내에 따라 다시 들어와 소지품 정리)
- 시험종료 시 '답안지'뿐 아니라, '문제지'도 회수 대상이므로 책상 위에 둔 상태로 나가야 함

## IV. 기타 시험 관련 공지사항

### 1. 기말평가 일시 및 장소

- 일시: 2022. 6. 12.(일) 14:00-18:00  
(다만, 시험시작 6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해야 하고, 시험시작 15분 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입실이 금지되며, 시험시작 후 15분이 경과된 시점에 다시 입실이 허용됨)
- 장소: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적인 공지사항 참조

### 2. 기말평가 전 질문금지 기간

- 2022. 6. 4.(토) 00:00부터 기말평가 당일인 2022. 6. 12.(일) 24:00까지는 질문

### 금지 기간임

- 위 기간 중에는 이메일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여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음

### 3. 기말평가 문제 유형 및 답안의 작성요령

- 기말평가 문제는 사례형 및 기록형으로 구분됨(각 문제별로 배점이 주어질 예정임)
- 기말평가 답안의 작성요령은 그 동안 강의시간에 연습한 사례형, 기록형 답안의 작성기준과 다르지 않음
  - ※ 학설 등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를 비롯한 2022 민사재판실무 강의내용에 따를 것
- 사례형
  - 각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게 주문, 결론과 그 논거 등을 기재하면 됨
- 기록형
  - 검토보고서는 대목차가 주어질 예정임
  - 기록형 문제에서 각종 송달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봄
  - 작성의 편의상 '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'은 '소속법'으로 줄여서 기재해도 무방하고, 법조문 기재시 '민법 제587조'를 '민법 587조'와 같이 '제'자의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함(그 외 촉락기재가 허용되는 경우는 시험 유의사항 및 알려두기에 별도 고지 예정)
  - 기록형 문제에서 인청근거에 '본문 전체의 취지'를 쓸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함
  - 그 외의 사항은 '알려두기'를 참고할 것

끝.